#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14

2021년 3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2월 5일 김정태 의원 외 16명

2.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2월 26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 (김정태 의원)

# 1. 제안이유

-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3·1운동은 당시 무단통치기에 침체된 독립운동을 부활시키고,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3·1운동의 정치적 실현인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헌법전문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
- 또한 과거 3·1운동 기념 관련 사료에 따르면 3·1운동의 기념행사는 경사일이자 축제로서의 성격을 지녔는바, 오늘날의 3·1운동 및 3·1절 관련 기념행사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축제로서의 성격이 축소되고. 추모 또는 만세운동 재현에 집중하고 있음.

○ 이에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민 누구 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회복하여 시민의 애국정 신 고양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조례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해 정의함(안 제3조)
- 라. 3·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마. 3·1운동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3·1운동 기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7조)
- 바. 3·1운동 기념사업의 주요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아. 3·1운동 기념사업에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국가보훈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첨부)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제정안의 취지

- 본 제정안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회복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음.
- ㅇ 제정안은 13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 및 계승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기본이념(안 제2조)으로 3.1운동의 자유·평등·평화정신이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하며, 정의규정(안 제3조)에서는 3·1운동 기념사업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시장의 책무(안 제4조)로 3·1운동 기념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등을 명시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3.1운동 기념사업 기본원칙(안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7조), 3.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및 위원회 설치 등(안 제8조~안 제9조), 지원(안 제10조) 및 협력체계구축(안 제11조), 표창(안 제12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책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3·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 제7조(3·1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제8조(3·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지원)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표창) 제13조(시행규칙) 부 칙

####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총칙 규정(안 제1조~안 제5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기본이념(안 제2조), 용어정의(안 제3조),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3·1운동 기념사업에 필요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기본이념(안 제2조), 용 어정의(안 제3조),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 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3·1운동 기념사업에 필요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총칙규정은 3·1운동 기념사업의 목적 및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3·1운동 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새로운 고찰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하겠음.

# 나. 기본원칙 및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6조~안 제7조)

- 본 조례안은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정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세부 사항으로는 3·1운동의 역사성과 정신의 충실한 반영 및 범 시민적 참여 유도와 경축 분위기 조성,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 지 않은 범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및 선양행사 추진 등을 통

- 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3·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 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3. 3·1운동 기념사업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 4. 3·1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 5. 그 밖에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 조례안은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기본원칙 하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추진계획은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종합적인 장단기 전략과 시책들을 담은 일종의 종합계획으로 보통 3~5년의 주기로 수립하므로, 동 조례의 5년 주기는 바람 직하다 할 수 있음.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임.

# 다. 3·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안 제8조)

조례안은 3·1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3·1운동
 관련 학술, 출판 및 문화·예술 사업, ▲3·1운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1운동 관련 순국선열 추모 및 선양 사업, ▲관련

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관리 사업, ▲3·1절 경축행사,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를 통해 3·1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서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대한 민국 100주년 2019년 서울시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3개 분야에서 32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본 사업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일회성·행사성으로 진행된 사항임.
- 서울시는 3.1운동 기념을 목적으로 총 2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먼저 복지정책실 소관으로 광복회서울특별시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1절 민족정기선양대회'는 3.1절을 맞이하여 회원위문 및 격려로 3·1운동 정신을 고취하고, 광복회원들이 단합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배양하여 국가발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하고 있음. 사업내용으로는 3·1절 노래제창 및 만세삼창, 3·1운동관련 동영상 시청 등이며, 행사 위주의 일회성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문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1운동 기념사업'은 3·1운동 관련 행사 및 독립운동역사 교육, 유적지 탐방 등을 자치구 공모사업 으로 실시하고 있음. 사업 추진절차는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발 송하여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신청서류 접수 후 내부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 및 심사를 실시하여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형태 임. 선정된 공모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며, 사업을 실시하고 사 업결과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표〉 2021년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절차

방침수립 및 공모	<b>•</b>	접수	<b>•</b>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b>•</b>	보조금 신청 및 교부	<b>•</b>	사업결과 및 최종평가
'21.2.5 (역사문화재과)		'21.2.5~2.22 (天庆 <del>厅 2</del> 外문室杯记)		'21.2.23 (역사문화재과)		"21.2 (ストス <del>ド 2</del> トトトニラトトロト)		<sup>'</sup> 21.12 (자자 <del>구 역</del> 사문화재)

- 복지정책실 및 문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1운동 기념사업은 일회성이거나 사업 범위가 다소 협소한 경향이 있음. 그러므로 본 조례 제정안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3·1운동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계획과 수행의 필요성이 있 다고 할 것임.
- 다만, 3·1운동 관련 학술, 출판 및 문화·예술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관련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관리사업의 경우 역사적 고증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파급력이 큰 사항으로복지정책실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음. 그러므로 추후 관련 부서 간 협의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라. 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9조)

- 본 조례안은 3·1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문을 위한 "3·1운동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3·1운동기념사업위원회는 3·1운동 기념사업의 자문을 위해 운영되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
- 위원회 설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행정집행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정으로 여겨짐.
- 또한 시장의 조직편성권에 해당하는 위원회 설치·구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반대의견이 없는 바, 위원회 설치·구성자체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마.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안 제11조)

- 조례안(안 제10조)은 3·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3·1운동 기념사업 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또한 3·1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 타 지 자체, 관련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안 제11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의 제정 사항인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바. 그 외 규정(안 제12조~안 제13조)

○ 제정안은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법 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표창(안 제12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안 제13조)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사. 집행부 의견

 본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 및 호국정신 계승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 없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음.

# 3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한국독립운동을 대표하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및 발전시키고 서울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 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 고 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3.1운동 기념사업을 다방면으로 확장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독립 정신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제정안의 3·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사항은 복지정책실에서 총괄 관리·감독하기에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며 역사적 고증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14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김정태, 김달호, 김재형,

> 김제리, 김종무, 김평남, 노승재,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아량, 양민규, 이상훈, 이정인, 최정순 의원(17 명)

#### 1. 제안이유

-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3·1운동은 당시 무단통치기에 침체된 독립운동을 부활시키고,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계 기가 되었으며, 이는 3·1운동의 정치적 실현인 민주공화제의 대한민 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헌법」전문을 통해 3· 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
- 또한 과거 3·1운동 기념 관련 사료에 따르면 당시 3·1운동의 기념 행사는 경사일이자 축제로서의 성격을 지녔는바, 오늘날의 3·1운동 및 3·1절 관련 기념행사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축제로서의 성 격이 축소되고, 추모 또는 만세운동 재현에 집중하고 있음.
- 이에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민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회복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 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조례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해 정의함(안 제3조)
- 라. 3·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마. 3·1운동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3·1운동 기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7조)
- 바. 3·1운동 기념사업의 주요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아. 3·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국가보훈 기본법」

#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 및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3·1운동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나라의 독립과 겨레의 자유를 선언하여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3·1운동 기념사업을 통하여 3·1운동의 자유·평등·평화정신이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3·1운동 기념사업"이란 3·1운동 및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업 및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서 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행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1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독립운동의 역사 및 순국선열의 정신 계승에 대한 올바른 교

- 육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시민은 3·1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순국선열의 공훈 및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3·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 시장은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3·1운동의 역사성과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할 것
  - 2.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축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할 것
  - 3.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및 선양 행사 추진 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
- 제7조(3·1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1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3. 3·1운동 기념사업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 4. 3·1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 5. 그 밖에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3·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3·1운동 관련 학술, 출판 및 문화·예술 사업
  - 2. 3·1운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 3. 3·1운동 관련 순국선열 추모 및 선양사업
  - 4. 관련 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관리 사업
  - 5. 3·1절 경축행사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3·1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3·1운동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3·1운동기념사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3·1운동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표창) 시장은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법 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20300000006

# 미첨부사유서(1호)

요 청 인 : 김정태 의원 담당: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채소영 주무관

접 수 일: 2021.02.03

회 신 일 : 2021.02.05 내용문의 : 02-2180-7942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 1. 비용발생 요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3. 미첨부 사유
- 4. 작성자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5조(기념사업)제1호에 따른 항일독립 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 비용,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용 등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5조(기념사업)제2호에 따른 항일독립운동 희생자 추모사업은 기추진사업이므로 별도비용이 발생하지 않음(붙임 참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 나. 추계결과 = 649,500천원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649,500천원(연평균 129,9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게됩	소계(a)	-	-	-	-	-	-
세출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 비용(안 제6조 제2호)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 운영비용(안 제6조 제5호)	9,900	9,900	9,900	9,900	9,900	49,500
	소계(b)	129,900	129,900	129,900	129,900	129,900	649,500
□총 비용(b-a)		129,900	129,900	129,900	129,900	129,900	649,500

- $\bigcirc$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 비용 = 6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항일독립운동정신계승을 위한교육, 학술, 문화사업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 비용
  - = 지원단가 × 1식
  - = 120,000천원
- ※ 참고) 2019년 서울시 3.1운동 및 임시정부 심포지엄·전시회 예산이 240,000천원이었으나 100주년이 아닌 평년도 예산은 절반수준으로 가정
-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 운영비용 ≒ 49,5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지원회원회운영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 운영비용
  - =(참석수당×수당지급 참석인원×개최건수)+(업무추진경비×참석인원×개최건수)
  - $=(150,0009\times99\times69)+(30,0009\times109\times69)$
  - =9,900천원
  - = 120,000천원
- ※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고 수당을 받는 위원은 9명이며, 연간 총 6회 개최(2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붙임) 항일독립운동 희생자 추모사업(안 제5조(기념사업)제2호 관련) : 기 추진

: 2020년 서울시 보훈단체 지원 예산(3,561,100천원) 중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100,000천원)와 봉오동전투 100주년 기념사업, C-47기 전시 및 교육, 13도 창의군탑 정비 및 기념사업 지원예산 등 편성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liz1998@seoul.go.kr